

#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 부 경 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 6 . 23 평창군수(재무과장)
- 나. 회부일자 : 1999. 7 .27 .
- 다. 상정일자 : 1999. 7.28.제6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

## 2. 제 안 이 유

-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전 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원활하게 구성하고자 심사위원회 내부위원 범위를 지방세관련 5급이상에서 6급이상으로 확대조정.
-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이 제한세율로 변경되고 소액부정수의 범위가 2,000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어 현재의 1,000원의 세액은 정세비용에도 못미치고 소액정수의 범위안에 있어 부과할 수 없으므로 세액 현실화를 위하여 5,000으로 인상 조정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와 관련 기재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신고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타법에 의하여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행정규제 완화측면에서 이 조항을 개정

## 3. 주 요 내 용

- 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내부위원의 위촉자격을 지방세관련 5급이상에서 지방세관련 6급이상으로 확대(안제8조제2항).

나.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현실에 맞게 1,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

다. 건축물변동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에 관련법규와 중복되거나 사문화된 것을 행정규제완화측면에서 실정에 맞도록 개정 보완

라. 종합토지세 관련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을 재산세 규정과 같이 개정.

#### 4. 검토 의견

##### ■ 먼저 관련법을 검토하여 보면

○ 지방세법 제7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과세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두게되어 있으며, 위원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었음.

- 우리군 평창군세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이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이상의 지방세관련 공무원과 판사, 검사등 6인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세법 제176조(세율)에 규정에 의거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시장, 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 제179조(소액부징수)에 의거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주민세를 징수못하도록 되어 있음.

○ 지방세법 32조(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및 제79조(신고의무) 규정에 의거 건축물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권 또는 과세대상 토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된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 부터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음.

## ■ 종합 검토결과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중 현직 지방세관련 공무원을 5급에서 6급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심사시 실무적인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법등 별문제점이 없으며,
- 주민세에 대한 집행부의 원가분석액은 3,838원이며 강원도 18개시군 살펴보면 춘천,원주,강릉,삼척은 현재 세액보다 2배(시 3,600원, 군 2,000원)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시지역중 동해,속초는 4,000원, 태백은 5,000원으로 하는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군지역은 형평성을 유지하기위하여 군간 협의가 이루어져 5,000원으로 결정되거나 입법예고중임, 따라서 주민세 과세기준일이 8.1일자인 점을 고려할 때 의결이 불가피함에 따라 원가분석, 시군간의 형평성, 물가상승율등을 고려하여 세액을 의결해야 할 것임..
-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 토지 신고의무는 건축법, 지적법등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어 내부적인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문제점이 없음.